

## 세 액 감 면 신 청 서

(앞 쪽)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제<br>출<br>인 | ①법인명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②사업자등록번호 |  |
|             | ③대표자 성명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④법인등록번호  |  |
|             | ⑤사업장(본점)소재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⑥업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⑦사업개시일자  |  |
| ⑧사업연도       |             | 년 월 일부터<br>년 월 일까지 |          |  |

### 신청내용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채무인수<br>변제받은<br>법인 | ⑨법인명   |  |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⑪대표자성명 |  | ⑫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⑬이월결손금 |  | ⑭기타 채무면제 ·<br>자산수증익 |  |
| ⑮채무인수변제액           |        |  | ⑯감면세액               | 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[ ] 제36조제18항, [ ] 제116조의31제19항)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## 작성 방법

1.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⑭기타 채무면제·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6조제3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31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.